#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472 제출연월일: 2024. 9. 30.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 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17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인증받은"을 "제17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 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 람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 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 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 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 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 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

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 성 교육프로그램
-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 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시·도지 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삭 제>

####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 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 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 ·자문하기 위하여 <u>제17조제2</u> 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 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 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 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세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
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제17조제1
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
<u>그램</u>
②

지도하기 위하여 <u>제17조제2항</u> <u>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u> 농어 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 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

	제17조제3호
<u>에 따른</u>	
3	
<u>제17조</u>	제4호에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	] ·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위탁) ①
④ (현행과 같음) ]26조(권한의 위임	
· ④ (현행과 같음) l26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②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	
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	<u>&lt;삭 제&gt;</u>
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	
급	
<u> </u>	
<u>무</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 4. (생 략)	,
- 4.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 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u> 삭 제>
4.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 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u> 삭 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	
수한다.	